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8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김도읍 · 인요한 · 이현승
조지연 · 구자근 · 권영진
윤한홍 · 임종득 · 정점식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함)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같은 법(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

한편, 다른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 등 타 개발사

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주택지 미등기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주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주택지를 전매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대책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를 공급받기로 결정되었으나 공급대상 주택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3조의3(이주대책 등) ①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주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하루 없고, 누구든지 그 주택지를 전매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다만,</u>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주택
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
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는 같은 법 제7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기 전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